

중평출장소 소관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994. 12.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 | |
|-------------------|-----|
| 1. 개 요 | 649 |
|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규모 | 649 |
| 나. 증평출장소 세출예산안 규모 | 650 |
| 2. 검토의견 | 651 |

1. 개요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 기정예산액 | | 증△감 | |
|----------|---------|------|---------|------|--------|------|
| | 금액 | (%) | 금액 | (%) | 금액 | (%) |
| 합계 | 526,770 | 100 | 514,520 | 100 | 12,250 | 21.7 |
| 인건비 | 38,966 | 7.4 | 38,966 | 7.6 | - | - |
| 물건비 | 27,305 | 5.2 | 27,247 | 5.3 | 58 | 0.2 |
| 이전경비 | 102,734 | 19.5 | 103,764 | 20.2 | △1,030 | 1.0 |
| 자본지출 | 337,185 | 64.0 | 324,100 | 63.0 | 13,085 | 4.0 |
| 용자 및 출자 | 5,012 | 1.0 | 5,012 | 1.0 | - | - |
| 보전재원 | 1,705 | 0.3 | 1,705 | 0.3 | - | - |
| 내부거래 | 9,116 | 1.7 | 9,017 | 1.8 | 99 | 1.1 |
| 예비비 및 기타 | 4,747 | 0.9 | 4,710 | 0.9 | 37 | 0.8 |

- '94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145억2천만원 대비 2.4%인 122억5천만원이 증액된 5,267억7천만원 규모임.

나. 중평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 기정예산액 | | 증△감 | |
|----------|--------|------|--------|------|------|-------|
| | 금액 | (%) | 금액 | (%) | 금액 | (%) |
| 합계 | 16,150 | 100 | 16,164 | 100 | △14 | △0.09 |
| 인건비 | 4,056 | 25.1 | 4,056 | 25.1 | - | - |
| 물건비 | 2,302 | 14.3 | 2,262 | 14.0 | 40 | 1.8 |
| 이전경비 | 1,449 | 9.0 | 1,576 | 9.8 | △127 | △8.1 |
| 자본지출 | 8,239 | 51.0 | 8,166 | 50.0 | 73 | 0.9 |
| 용자 및 출자 | - | - | - | - | - | - |
| 보전재원 | 104 | 0.6 | 104 | 0.6 | - | - |
| 내부거래 | - | - | - | - | - | - |
| 예비비 및 기타 | - | - | - | - | - | - |

○ 중평출장소 소관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61억5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1억6천4백만원에 비하여 0.09%인 1천4백만원이 감액된 규모임.

○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5,267억7천만원에 비하여는 3.1%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1994년도 증명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정산정리 차원의 예산으로서 쓰레기처리에 관련한 청소행정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1억6천4백만원 대비 0.09%인 1천4백만원이 감액된 161억5천만원 규모로서

- 이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기본적 경비에 있어

- 물건비 4천만원 (1.8%증)

- 이전경비 △1억2천7백만원 (8.1%감)

- 사업비에 있어서

- 자본지출 7천3백만원 (0.9%증)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첫째, 물건비 4천만원의 증액 내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닐봉투제작에 필요한 경비와 청소년선도 교육비, 장애인의료비 지원비 등의 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으로 승인하여 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둘째, 이전경비 1억2천7백만원의 감액 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정산정리차원으로 저소득자녀학비 및 고용촉진 훈련비의 감액 조치와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거택구호비 및 보육시설운영비 등의 감액조치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셋째, 자본지출 7천3백만원의 증액내역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성립진집행된 예산의 계상과 가축수해부구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의 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증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